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- 3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
- 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의견반영(여성가족과)

의안번호	2089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5. 28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,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8조)
- 다.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1. 4. 30. ~ 2021. 5. 20.)결과 : 별도의견 없음
 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”이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노래연습장업”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.

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2.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
3.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
2. 교육일시 및 장소
3. 교육내용 및 방법
4. 교육진행
5. 강사확보
6. 소요예산

제5조(교육교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방법)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. 다만,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강사) ① 강사는 학계·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의 통지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이수자 관리)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·비치하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불참자 조치)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교재 제작비, 교육강사 강의료, 간식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김화동
연 락 처	2627 - 1454

관계법령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717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 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 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1. 1. 1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9호, 2020. 12. 31, 일부개정]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 4.>

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